

제348회 정례회
2016. 6. 8.(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박종규 의원 등 7명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6년 5월 31일
- 회부일자 : 2015년 6월 1일

3. 제안이유

-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노인성 질환인 치매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고, 치매유병률('15)을 보면, 충북의 경우 10.6%로 전국 평균 9.8%보다 높은 수준임.
- 이에 도민의 치매예방 등 관리에 관한 정책을 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 치매로 인한 환자의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도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가. 치매, 치매환자, 치매관리 등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 나. 치매관리사업의 시행을 통해 도민의 치매 예방과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 (안 제3조)
- 다. 치매관리에 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4조)
- 라.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규정함. (안 제5조)
- 마.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 사항을 규정함. (안 제6, 7조)
- 바. 수탁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및 의무를 규정함 (안 제8, 9조)
- 사. 광역치매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사무에 대해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0조)

아. 광역치매센터의 위탁에 대한 취소 사유를 규정함 (안 제11조)

자. 치매관리사업 수행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2조)

차. 치매관리에 공헌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 규정 (안 제13조)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를 지원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충청도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성 치매환자의 증가가 예측되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제도적 대응과 기 운영 중인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이라는 점에서 제정 취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또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포함되며, 「치매관리법」 제3조, 제5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6조의2, 제18조 등에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는, 치매예방과 진료에 대한 사업 시행과 지원을 통한 치매 예방 및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 안 제4조는,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 및 평가하도록 한 것으로 「치매관리법」 제6조 제4항에 의거 수립된 보건복지부의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 안 제5조는, 도지사가 수행할 수 있는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범주별로 명시하여, 사업에 대한 범주별 체계적 계획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였음.
- 안 제6, 7조는, 충청북도광역치매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업무내용과 위탁방법에 대한 체계가 명확해 짐.
- 안 제8, 9조는, 수탁기관의 선정절차와 의무에 대해 규정함.
- 안 제10조는, 광역치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 사무에 대한 장부 및 서류의 조사,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1조는, 위탁의 취소 사유와 취소나 계약만료시의 수탁재산 반환에 대하여 규정함.
- 안 제12조는, 치매센터 수탁기관 및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경비 지원 시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 안 제13조는,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른 포상을 규정함.

○ 치매관리 조례는 현재 13개 광역·자치 시·도에서 운영 중에 있고,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용역¹⁾을 통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제시된 바, 체계적인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을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치매관련 조례 미 제정 시도 (4개 지역) : 대구, 경남, 제주, 충북

1)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의정학술연구용역, “충청북도 노인 건강지원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15. 12.1~’16. 4.30.

<참고자료>

□ 충청북도 치매환자 관리 현황

(단위 : 명)

시군명	치매환자 등록인원	시군명	치매환자 등록인원
총 계	9,636		
청주시 계	2,315	기타 시군계	7,321
상당구	593	충주시	1,403
서원구	621	제천시	720
흥덕구	505	보은군	834
청원구	596	옥천군	795
		영동군	1,024
		증평군	382
		진천군	733
		괴산군	558
		음성군	594
		단양군	278

* 유병율 대비 추정환자 : 23천명

□ 충청북도광역치매센터 현황

○ 설치위치 : 충북대학교 병원 内

※ 복지부 공모선정(지역 5개병원 참여 : **충대병원** 건대 충주병원 청주의료원 청주성모 청주효성병원)

○ 위탁기간 : 3년('13.12.27~' 16.12.27)

○ 센터인력 : 9명(센터장 1, 사무국장 1, 팀원 7)

○ 사업비 : 589백만원(기금 412, 도비 177)

○ 시설개요

- 면 적 : 345.3㎡

- 시설현황 : 사무실, 상담실, 회의실, 프로그램실, 교육 및 세미나실 등

○ 주요역할

- 충청북도 치매관리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도-센터-보건소-유관기관)

- 교육·홍보, 인식개선사업, 자원연계사업 추진